#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30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·허 영·김수흥

한병도 · 김경협 · 정춘숙

이상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관련된 대학·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4(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 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 자원의 개발·연구
  - 2.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 - 3.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,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
  - 4.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 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신 설>	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의 개발·연구 2.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인력의양성을 위한 학계,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.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 및 그 밖의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## 를 지원할 수 있다.